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5.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①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1. 세 입	1
2. 세 출	3
가. 개 요	3
나. 예비비	3
다. 전 용	4
라. 이 용	4
마. 수입대체경비	5
바. 이 월	5
사. 불 용	6
I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7
1. 개 요	7
2. 총 괄	8
3. 재외동포 지원	11
가. 개 요	11
나.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5032-302)	13
다.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17
라.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20
4. 재외동포 행정지원	23
가. 개 요	23

나. 인건비(7101-101)	25
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7121-301)	28
5. 재외동포협력센터	31
가. 개 요	31
나. 수 입	31
다. 지 출	32
라. 검토의견	34
III. 재외동포청 통합 재무결산 분석	41
1. 총 괄	41
2. 재정상태표 분석	41
3. 재정운영표 분석	43
4. 순자산변동표 분석	46
IV. 재외동포청 성과관리 분석	48
1. 총 괄	48
2. 성과체계 현황	50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3
V.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4
VI.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5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총괄		☐ 과도한 예산조정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 청년인턴십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필요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 재외동포 긴급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 연구용역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필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인건비	☐ 인건비 예산 불용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된 소송예산의 불용 문제
재외동포 협력센터	동포지원사업	☐ 신규사업 편성 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실행력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필요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	1	-	-	1	-	-
경상이전수입	-	8,798	8,798	-	0.4	8,79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	4	4	-	-	△5	44.4
합 계	9	8,803	8,802	-	1	8,793	97,800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8억 2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87억 9,300만원이 증가(97,800%)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舊 재외동포재단 재산의 국고 귀속 및 과년도 사업비 반납 등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1	-	민간단체 보조금의 과년도 반납, 예치 이자 등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1	-	
12관 경상이전수입	8,798	-	舊 재외동포재단 재산 국고 귀속, 공관 사업비 및 동포단체 보조금의 과년도 반납 등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8,798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8,798	-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5	수수료 수입액 감소
65항 면허료및수수료	-	5	
651목 면허료및수수료	-	5	
합 계	8,798	5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율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C/A)	(C/B)		
106,660	109,901	100,700	94.4	91.6	820	8,381

※ 예산현액(109,901백만원) = 당초 예산액(106,660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3,241백만원)

2024년도 당초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66억 6,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2억 4,1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이 1,099억 1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1,007억원을 집행(94.4%)하였고, 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다. 전 용

<전용 개요>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해외이전)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 예산 조정	392
	(여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초청 및 재외동포 담당관회의 사업 수행 등 여비 부족분 조정	375
	(운영비) 세계한인회장대회 숙박비 집행 및 사할린 위문품 지원사업 수행 등 운영비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	277
	(연구용역비)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 조정	174
합 계		1,218

2024년도 전용액은 총 12억 1,800만원으로,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 예산 조정 3억 9,200만원,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초청 경비 등 여비 조정 3억 7,500만원, 세계한인회장대회 숙박비 집행 등을 위한 운영비 조정 2억 7,700만원, 재외동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조정 1억 7,400만원이 전용되었음.

라. 이 용

해당사항 없음.

마. 수입대체경비

해당사항 없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310
	일반용역 미지급금 발생	265
	소 계	575
기본사업비 이월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245
	소 계	245
합 계		820

2024년도 이월 규모는 8억 2,000만원으로, 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일반용역 수행 미지급 등(5억 7,500만원)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지급사유 미발생	384
	소 계	384
계획변경 또는 취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379
	소 계	379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40
	소 계	140
환율 변동	집행 환율 변동	2
	소 계	2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4,597
	소 계	4,597
집행잔액 등	기타 집행잔액 등	2,879
	소 계	2,879
합 계		8,381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83억 8,1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3억 8,4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3억 7,900만원, 예산 절감 1억 4,000만원, 환율 변동 2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45억 9,700만원, 집행잔액 등 28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재외동포 지원 및 재외동포 행정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1,06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4,1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1,099억 100만원임. 이 중 1,007억원을 집행하였고, 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42,129	106,660	109,901	100,700	91.6	107,063
[5000] 재외동포 지원	24,513	73,965	74,959	71,554	95.5	82,580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17,615	32,695	34,941	29,147	83.4	24,483

2. 총 괄

□ 과도한 예산조정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5일 개청된 신설 조직으로, 2024년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첫 회계연도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의 소관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달리 다수의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음¹⁾.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반복적인 조정이 발생하였고, 특히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500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

< 2024년 재외동포청 사업의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감액(~에서)			증액(~으로)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4.11.	자체 전용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국외업무여비 (220-02)	170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일반용역비 (210-14)	170
5.29.	자체 전용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일반수용비 (210-01)	3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국외업무여비 (220-02)	3
7.3.	자체 전용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정책연구비 (260-02)	60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일반수용비 (210-01)	60
8.14.	자체 전용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일반수용비 (210-01)	3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국외업무여비 (220-02)	3
9.5.	승인 전용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민간경상보조 (320-01)	392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해외경상이전 (340-01)	392

1) 2024년의 경우 자체전용 및 기획재정부 승인전용은 14회, 내역변경은 8회, 세목조정은 72회가 이루어짐.

일자	구분	감액(~에서)			증액(~으로)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9.19.	자체 전용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035-302)	일반용역비 (210-14)	10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035-302)	정책연구비 (260-02)	10
9.30.	자체 전용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302)	일반수용비 (210-01)	42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302)	일반연구비 (260-01)	42
9.30.	자체 전용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국외업무여비 (220-02)	7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5031-301)	국외업무여비 (220-02)	7
10.11.	자체 전용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국외업무여비 (220-02)	17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일반수용비 (210-01)	16
						임차료 (210-07)	1
10.25.	자체 전용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5034-301)	일반용역비 (210-14)	80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5034-301)	정책연구비 (260-02)	80
10.28.	자체 전용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033-301)	국외업무여비 (220-02)	30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033-301)	일반용역비 (210-14)	30
11.19.	자체 전용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5035-304)	일반용역비 (210-14)	345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5035-304)	국외업무여비 (220-02)	345
11.22.	자체 전용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033-302)	일반수용비 (210-01)	6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033-302)	국외업무여비 (220-02)	18
			임차료 (210-07)	12			
11.22.	자체 전용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1)	일반수용비 (210-01)	42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1)	일반연구비 (260-01)	42

※ 자료: 재외동포청

이는 재외동포청의 초기 기획·편성 역량 부족과 더불어, 부처 간 협의 지연, 조직 및 사업계획 수립의 미비 등 출범 초기 행정역량 한계로 인해 예산의 본래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고 다수의 변경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임.

국가 예산의 조정제도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도 집행 과정에서의 변화된 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 항목 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

고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이러한 예산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이 집행단계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 저하, 편법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예산조정은 필연적이고 유용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예산 통제 및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외동포청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등 예산조정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3. 재외동포 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7개의 단위사업과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739억 6,500만원이고, 715억 5,400만원이 집행됨.

<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5000] 재외동포 지원			24,515	73,965	73,965	71,554	82,580
	[503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830	3,065	3,065	2,976	4,673
		[30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830	906	906	904	1,006
		[30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2,159	2,159	2,072	1,917
		[302] 동포간담회 개최 (※ 2025년 신규사업)	-	-	-	-	1,750
	[5032]	글로벌 인재양성	295	922	922	901	589
		[301] 워킹홀리데이 이행	295	665	665	653	532
		[302]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	257	257	248	57
	[5033]	재외동포 권익향상	666	1,410	1,410	1,231	1,696
		[301]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339	728	728	645	582
		[302]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327	682	682	587	1,114
	[5034]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1,484	10,022	10,022	9,790	10,100
		[301]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384	820	820	607	131
		[302]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1,100	9,202	9,202	9,182	9,969
	[5035]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7,655	33,105	33,105	31,207	33,556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301]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2,679	7,100	7,100	6,569	6,972
		[302]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1,808	22,194	22,194	21,288	22,652
		[303]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1,398	1,353	1,353	1,313	1,283
		[304]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1,770	2,458	2,458	2,036	2,649
	[5036]	재외동포정책 기반조성	420	1,687	1,687	1,695	4,209
		[301] 공보·홍보 역량강화	420	1,687	1,687	1,695	4,209
	[5037]	재외동포협력센터	13,165	23,754	23,754	23,754	27,757
		[302]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3,165	23,754	23,754	23,754	27,757

나.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5032-302)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단기 인턴 활동을 통해 모국 연계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거주국과 모국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57	-	-	-	257	248	-	9	96.5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5,700만원으로, 이 중 2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5%임.

□ 청년인턴십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필요

동 사업은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의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의 단기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청년인턴은 재외공관에서 공공외교, 영사업무, 홍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정책 활용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재외공관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총 18개 재외공관에서 24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였고, 인턴십 기회를 부여받은 청년인턴은 각 공

관에서 공공외교, 영사서비스 지원,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관별 여건에 맞추어 단기 실무과제를 수행하였음.

< 2024년 재외공관별 청년인턴 선발 현황 >

재외공관	선발(명)	재외공관	선발(명)
주뉴욕(총)	2	주멜번(분)	2
주LA(총)	1	주카자흐스탄(대)	2
주휴스턴(총)	1	주프랑크푸르트(총)	1
주일본(대)	2	주상파울루(총)	1
주오사카(총)	3	주오클랜드(분)	1
주러시아(대)	1	주프랑스(대)	1
주토론토(총)	1	주인도네시아(대)	1
주밴쿠버(총)	1	주태국(대)	1
주호주(대)	1	주키르기즈(대)	1

※(대): 대사관, (총): 총영사관, (분): 분관

※자료: 재외동포청

동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에게 국정참여 및 외교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인턴십 과업의 내용과 수준이 공관별로 상이하여,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수행한 업무의 전문성·실효성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관에서는 인턴에게 단순 행정지원 위주의 업무만을 배정하여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재외동포 청년인턴의 재외공관 담당업무 >

재외공관명	과업(담당업무)
주인도네시아(대)	[영사] 민원안내, 동포행사 지원
주카자흐스탄(대)	[영사] 고려인 동포행사 지원, 고려인 동포 관련 SNS 영상 제작 등
주토론토(총)	[경제] 캐나다 경제 분야 조사 및 연구
주프랑크푸르트(총)	[정무],[홍보] 정무, 문화홍보, 통번역
주오슬랜드(분)	[홍보] 문화, 공공외교보조, SNS 관리, 재외동포
주오사카(총)	[영사] 민원안내, 동포행사 지원
주일본(대)	[영사] 민원안내, 동포행사 지원
주밴쿠버(총)	[홍보] 재외동포 · 공공외교 · 보훈행사지원
주호주(대)	[영사] 재외공관 업무 지원
주휴스턴(총)	[홍보] 공관 SNS 관리 및 콘텐츠 제작, 공관 행사 홍보 및 취재, 서포터즈 운영 등
주키르기즈(대)	[홍보] 재외동포, 공공외교 업무 지원
주러시아(대)	[영사] 영사서비스 업무 지원
주프랑스(대)	[홍보] 공공외교, 문화, 재외동포 행사 준비, SNS 콘텐츠 제작, 통번역 업무 등
주멜번(분)	[홍보] 공공외교
주상파울루(총)	[영사] 정무, 동포 업무 지원
주태국(대)	[영사] 영사과민원인방문안내등
주뉴욕(총)	[영사] 동포팀업무지원
주LA(총)	[영사] 민원실 업무 지원, 민원환경 및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동 사업은 2024년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신규로 도입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5,700만원만이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규모도 5명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임. 이러한 급격한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이 국정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당초의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영사

및 홍보 분야의 보조적인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청년인턴의 과업 분야를 정무,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24년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및 정량적 성과지표, 2025년 재외공관의 수요²⁾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³⁾에서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2025년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수요조사 개요

- (기간) 2025. 1. 12. ~ 30.
- (대상) 전 재외공관
- (회신 공관) 35개 공관, 인턴 40명 수요 파악
 - ‘24년 사업 운영 공관 18개 중, 15개 공관 재신청(83.3%)
- (근무형태) ▲주 2회 4시간(2개 공관) ▲주 2회 8시간(1개 공관) ▲주 4회 8시간(1개 공관)
▲주 5회 4시간(8개 공관) ▲주 5회 8시간(23개 공관) 등

3)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안을 2024년 사업 규모(25명) 수준인 3억 5,500만원으로 증액 요청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음.

다.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사업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682	66	-	-	748	587	106	55	78.4

2024년도 예산액 6억 8,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4,800만원 중 1억 600만원은 이월되고 5,5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5억 8,7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4%임.

□ 재외동포 긴급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은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역사업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의 내내역사업 중 하나임. 2024년도 예산액은 일반수용비(210-01)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재외동포청은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정책 강화”를 설정한바,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⁴⁾을 제정(2024. 2. 28.)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면서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위난에 대한 재외동포 지원 개요 】

- (지원 내용) 식품·의류 침구 등 생필품, 의약품, 임시거소 등 지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재외동포단체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동 사업의 2024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단체인 쿠바한글학교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물품과 선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있는 발전기 등은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성격의 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편성 비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예산 집행지침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

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는 각종 물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용 물품 구입, 인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

<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 사업 집행 내역 >

내내역사업명	비목	집행명	집행일시	집행 물품 내역	집행액 (백만원)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쿠바지역 해외 위난 지원 경비 공관 송금	2024.11.21.	발전기 2대 발전기 부품, 연료 배터리 세트 충전식 선풍기 차양막 및 철망	15

※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쿠바 현지의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생활용수 공급, 냉장고 가동, 냉방 등 필수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 한글학교에서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여 요청함에 따라, 구호품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운송비용,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침 제6조제2항6)에 따라 관할 공관의 감독하에 해당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함.

향후 재외동포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성격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을 사전에 검토 및 조정하여 예산의 목적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입비,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의 용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원대상단체에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한다.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단체가 허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라.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사업은 미주·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전 지역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위상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820	39	-	-	859	607	147	105	70.7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5,900만원으로, 이 중 6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1억 4,700만원과 불용액 1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연구용역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필요

재외동포청은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에 연구용역비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연구용역 7건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5건에서 예산 이월이 발생함.

< 2024년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 기간	수행기관	공개 여부	계약 방법
2024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21	-	21	2024.11. ~2025.2.	글로벌리서치 이엑스	비공개	제한경쟁 계약
2024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용역	22	22	-	2024.9. ~2024.12.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	비공개	수의계약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공개여부	계약방법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동포 실태조사	45	45	-	2024.8. ~2024.12.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공개	수의계약
재외동포기업 모국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95	-	95	2024.12. ~2025.5.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	-	수의계약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80	64	16	2024.12. ~2025.6.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 계약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북미 지역 재외동포정책 연구 용역	49	42	7	2024.10. ~2025.2.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제한경쟁 계약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정책 연구 용역	50	42	8	2024.10. ~2025.2.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제한경쟁 계약

※자료: 재외동포청

특히 ‘재외동포기업 모국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및 ‘국내체류 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일반용역비(210-14)의 전용 및 일반연구비(260-01)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신규로 마련하였고, 입찰공고를 통하여 12월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음.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에 추진한 사례로서, 사업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18.)	조사연구 활성화	일반연구비 (260-01)	56	조사연구 활성화	정책연구비 (260-02)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내역사업 간 조정 (2024.10.18.)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	정책연구비 (260-02)	40	조사연구 활성화	정책연구비 (260-02)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0.25.)	조사연구 활성화	일반용역비 (240-14)	80	조사연구 활성화	정책연구비 (260-02)	재외동포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 정책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자료: 재외동포청

「국가재정법」 제46조7)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체전용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 자체의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만, 예산집행지침은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하는 한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연구용역 예산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 ⑥(생략)

4. 재외동포 행정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326억 9,500만원이고, 291억 4,700만원이 집행됨.

<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17,615	32,695	32,695	29,147	24,483
	[7101]	인건비	3,059	12,721	12,721	8,451	10,214
		[101] 인건비	3,059	12,721	12,721	8,451	10,214
	[7111]	기본경비	1,582	5,683	5,683	5,122	5,856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330	1,270	1,270	927	1,240
		[202]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	3	3	3	5
		[203]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	18	18	12	18
		[204]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	11	11	10	18
		[205]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13	13	12	21
		[206]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	12	12	12	20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1,252	2,777	2,777	2,274	2,374
		[252] 대변인실 기본경비	-	33	33	30	33
		[253]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188	188	149	188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254]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	1,264	1,264	1,608	1,752
		[255]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	47	47	43	140
		[256]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	47	47	42	47
	[7112]	사무환경조성	5,459	-	-	1,325	-
		[251] 사무환경 조성	5,459	-	-	1,325	-
	[712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300	300	212	260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300	300	212	260
	[7131]	재외동포 정보화	7,514	13,991	13,991	14,037	8,153
		[301]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501	4,703	4,703	4,507	4,041
		[302]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3,687	6,954	6,954	7,244	2,212
		[30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326	2,334	2,334	2,287	1,900

나. 인건비(7101-101)

「인건비」 사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인건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2,721	-	-	-	12,721	8,451	-	4,270	66.4

2024년도 예산액은 127억 2,100만원으로, 이 중 8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7,0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6.4%임.

□ 인건비 예산 불용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재외동포청의 인건비는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정원 151명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인건비의 33.6%에 해당하는 42억 7,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함.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상당 규모의 인건비 예산 불용에 대해 2023년 개청 이후 지속된 정·현원 차이, 재외동포청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 직원의 보수 지급 기관, 편성 단가와 실제 보수 지급 금액 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 인건비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인건비	12,721	12,721	-	-	-	12,721	8,451	-	4,270	10,214
- 보수(110-01)	12,622	12,622	-	△4	-	12,617	8,399	-	4,219	10,125
- 기타직보수(110-02)	-	-	-	4	-	4	4	-	-	-
- 연가보상비(110-05)	99	99	-	-	-	99	47	-	52	89

※자료: 재외동포청

우선, 2024년 재외동포청의 월별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4명의 공석이 유지되고 있음. 이는 2023년 6월 개청 당시 정원 151명 대비 현원 47명으로 정원상 104명이 부족하던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충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인력 부족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재외동포청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정원(A)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현원(B)	135	137	138	142	137	137	137	133	136	138	139	139
	초과현원(B-A)	△16	△14	△13	△9	△14	△14	△14	△18	△15	△13	△12	△12

※자료: 재외동포청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2항8)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파견된

8)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이 파견 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는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재외동포청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된 타 부처 파견 공무원 15명 중 5명(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 각 1명)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제3항⁹⁾에 따라 타 부처 직무파견 인력이 정원에 포함되어 예산상 인건비가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건비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재외동포청은 향후 인력운영 계획과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정원과 현원 간 괴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고, 직무파견 인력의 보수 분담 방식에 대한 협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5명(5급 3명, 7급 2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7121-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은 신설조직인 재외동포청의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내 소통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 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00	-	-	-	300	212	7	81	70.6

2024년도 예산액은 3억원으로, 이 중 700만원은 이월되고 8,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2억 1,2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6%임.

□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된 소송예산의 불용 문제

내역사업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는 재외동포청 내 청렴교육 및 감사 자문을 통해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검토 등 법제지원과 함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1,900만원이고, 이 중 2억원은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편성되었음.

<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사업의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

편성근거	집행내역
■ 일반수용비(210-01): 219백만원 - 청렴 관련 교육 강사비: 1백만원 - 감사 관련 전문가 자문: 3백만원 - 감사장 설치·운영: 2백만원 - 감사 관련 사례집 발간: 1백만원 - 법령검토 자문 등 지원: 10백만원 - 소송대리인 선임: 200백만원 - 소송업무 참고자료 구입 등: 3백만원	■ 131백만원 - 청렴문화 정착: 16백만원 · 감사장 운영(복무평가, 자체감사 등), 청렴문화 정착 관련 기념품 제작, 감사 관리자 및 실무자교육 - 법제지원 강화: 82백만원 · 법률자문, 해외 법률서비스 구독료, 개혁TF 회의, 정부혁신 박람회 참여(부스 설치비 등) - 적극행정 추진 지원: 18백만원 - 조직진단 용역 선금: 15백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그런데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편성된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해당 예산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로 일부 전용되어 집행되었음.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사업의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비비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219	219	-	-	-	219	131	7	81	180
- 일반수용비(210-01)	219	219	-	△72	-	147	66	-	81	180
- 일반용역비(210-14)	-	-	-	50	-	50	50	-	-	-
- 일반연구비(260-01)	-	-	-	22	-	22	15	7	-	-

※자료: 재외동포청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타 중앙부처의 사례(외교부 4억원, 국토교통부 5억원, 해양수산부 2억 7,00만원)를 참고하여 2억원을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실제 소송이 발

생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는 재외동포청이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타 중앙부처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준용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특히, 소송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신설 기관의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소송 제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부처 수준의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기관의 특수성과 실제 소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소송의 발생 가능성 및 예상 소요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재외동포협력센터

가. 개 요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¹⁰⁾에 따라 설립¹¹⁾된 재외동포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4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237억 5,400만원, 자체 수입 6,900만원을 합쳐서 총 238억 2,300만원임.

10)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재외동포기본법」 공포(2023. 5. 9.)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개청과 함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됨.

< 재외동포협력센터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A)	결 산(B)	차 액 (B-A)	집행률 (B/A)
총 계	23,754	-	23,754	23,823	69	100.3
1. 정부출연금	23,754	-	23,754	23,754	-	100.0
2. 자체수입	-	-	-	69*	69	-
- 이자수입	-	-	-	10	10	-
- 잡수익	-	-	-	59	59	-

* 자체수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반납

다. 지 출

202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37억 1,000만원, 경상운영비 11억 6,900만원, 사업비 188억 7,500만원으로, 총 237억 5,400만원 중 20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증 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률 (E=(B+C)/A)
1. 인건비	3,710	-	3,710	3,710	-	-	100.0
2. 경상운영비	1,169	-	1,169	899	233	37	96.8
3. 사업비	18,875	-	18,875	15,973	2,057	845	95.5
계	23,754	-	23,754	20,582	2,290	882	96.3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A)	결산(B)	B/A	
총 계	-	11,282	23,754	22,872	96.3	27,757
□ 인건비	-	3,161	3,710	3,710	100.0	3,821
□ 경상운영비	-	1,103	1,169	1,132	96.8	1,169
□ 사업비	-	7,018	18,875	18,030	95.5	27,757
1. 차세대육성사업	-	2,486	8,020	7,997	99.7	9,166
- 차세대육성사업	-	2,486	8,020	7,997	99.7	9,166
2. 재외동포 장학사업	-	1,744	4,200	3,664	87.2	4,074
- 재외동포 장학사업	-	1,744	4,200	3,664	87.2	4,074
3. 동포지원사업	-	898	3,867	3,609	93.3	630
- 동포지원사업	-	898	3,867	3,609	93.3	630
4. 민족교육 육성	-	635	472	464	98.4	339
- 민족교육 육성	-	635	472	464	98.4	339
5. 기록전시운영	-	235	315	308	97.7	154
- 기록전시운영	-	235	315	308	97.7	154
6.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647)*	(7,809)	(-)	(-)	7,203 (7,809)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647)	(7,809)	(-)	(-)	7,203 (7,809)
7. 통합네트워크 지원	-	1,020	2,001	1,989	99.4	1,201
- 통합네트워크 지원	-	1,020	2,001	1,989	99.4	1,201

* 2023년 및 2024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 안은 재이월액임.

라. 검토의견

1) 동포지원사업

「동포지원사업」은 세계한인 정치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인 정치인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 및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지원을 통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한인 정치인포럼」,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 동포지원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5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동포지원사업	3,580	-	-	3,867	2,874	735	258	630
▪세계한인정치인포럼	580	-	287	867	813	-	54	580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3,000	-	-	3,000	2,061	735	204	50

2024년도 예산현액은 38억 6,700만원으로, 이 중 28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7억 3,500만원과 불용액 2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신규사업 편성 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은 급격한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 교체와 다문화·다중 정체성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유튜브 영상, 다큐멘터리, 웹툰, 캠페인 영상 등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중심의 홍보사업을 기획하였고, 2024년도 예산액으로 30억원을 편성하여 외부 전문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 운영, 특별 방송 제작,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 세부실적 >

-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제작 및 재외동포 홍보 통합 SNS 플랫폼 운영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저작권 분석
 - SNS 플랫폼 활성화 전략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 SNS 플랫폼: 유튜브(자랑스런 재외동포, 재외동포협력센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 유튜브 본영상 70건 외, 하이라이트 쇼츠, 카드뉴스 300건 등 제작
 - 콘텐츠 시리즈 브랜딩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
- 한인 정체성 함양 특별기획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소개를 통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청 제작 콘텐츠(2023년) 후속 특별기획 콘텐츠 제작
 - 유튜브 본영상 25건 및 하이라이트 쇼츠 50여건 등 제작
 - (히스텔링) 재외동포 역사·인물·모국기여 사례
 - (차세대 인간극장)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동포 이야기
 - (오! 코리아!) 모국문화 체험을 통한 뿌리찾기 프로젝트
- 재외동포 관련 특별 테마방송 제작 및 송출
 - 주요 테마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
 - 재외동포 특집 KBS 동네한바퀴(299회 카자흐스탄, 300회 우즈베키스탄) 2부작
 - 글로벌 휴먼기행 김영철이 간다(아르헨티나, 미국) 2부작
 - 700만개의 아리랑 1부작
 - 재외동포 홍보 통합 SNS 플랫폼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재외동포 홍보 통합 플랫폼 서포터즈 'KrossOver' 운영
 - 국내외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숏폼 영상, 단편 웹툰 등 월 20여편 / 활동기간 중 총 150편 제작
 - 활동인원: 30명(재외동포 11개국 16명, 내국민 14명)
 - 활동기간: 2024. 8월~2025. 2월, <7개월>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그러나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지 1년 만에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사실상 신규 콘텐츠 기획·제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작 추진 중이던 일부 콘텐츠의 활용계획 미비, 외부 용역 및 제작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 효과 미흡,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중장기 사업이므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정책 연계 계획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의 장기적 추진전략 및 예산 확보 계획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현행 「재외동포기본법」¹²⁾상 재외동포 대상 홍보 사업이 센터의 수행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사업이 본래 기능과 부합하나, 재외동포청이 현재 수행 중인 국내외 재외동포 대상 홍보 사업과의 기능 중복을 고려한 정책적 변화¹³⁾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함.

향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기관의 고유 기능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발굴·

12)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13)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범위 중 재외동포 대상 홍보 사업을 삭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2025. 3. 11.)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검토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이해·존중 바탕의 사회통합 및 한인 역량 결집을 위한 전시, 아카이브, 교육·연수, 조사연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 2024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추경 등	내역조정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7,809	-	-	7,809	-	7,809	-	7,203
▪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	-	7,809	-	-	7,809	-	7,809	-	7,203

동 사업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액인 78억 900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실행력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은 당초 구 재외동포재단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관련 상징적 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2021년부터 외교부 예

산에 반영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출연금 252억 5,300만원과 동포사회 기부금 47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9억 7,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¹⁴⁾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개요 >

- 사업명: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 사업기간: 2021년~2025년, <5년>
- 설계기간: 2023. 1. 25.~2025. 8. 29.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63㎡
-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 총사업비: 29,974백만원
 - 출연금 25,253백만원, 기부금 4,721백만원
- 주요 기능
 - 해외이주 역사유물전시관
 - 급속히 소실되어가는 재외동포 이주 역사 및 유물 수집, 전시
 - 전시자료·미전시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동포 자녀 및 내국민에 대한 올바른 이주 역사 교육
 - 정체성 함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차세대동포 대상 한국어, 한국 역사·문화, 한국 예절 교육 등 관련 상시적·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국·CIS지역 등 소실되어가는 우리 민족교육의 일선 교사들을 위한 국내 초청연수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 재외동포와 내국민이 함께하는 각종 화합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재외동포 특강, 포럼, 토론회 등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제고 프로그램 상설화

※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1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관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동 사업은 당초 2021년 부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부지 검토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된 부지 확보가 무산되었고, 2024년에 대체부지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부지를 최종적인 위치로 확정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이처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된 이후에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임.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총 84억 5,6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2023년에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집행한 6억 4,700만원이 전부인 상황임. 2025년에는 공사비 예산으로 7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78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0억 1,200만원임.

< 최근 5년간 예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추경 등	내역 조정				
2021	1,270	-	-	-	1,270	-	1,270	-
2022	7,186	1,270	-	-	8,456	-	8,456	-
2023	-	8,456	-	-	8,456	647	7,809	-
2024	-	7,809	-	-	7,809	-	7,809	-
2025	7,203	7,809	-	-	15,012	-	-	-

※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1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시작된 기본 설계가 그간의 예상하지 못한 지연 상황을 거치면서 2025년 6월에 완료된 바,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실시설계는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후 공사입찰 및 계약, 착공 등을 거쳐 최종적인 준공은 2028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는 물론,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된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Ⅲ. 재외동포청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개정 「국가회계법」(2008. 12)이 시행되고 있는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재외동포청 일반회계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¹⁵⁾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A)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일반회계	21,219	7,989	13,230	165.6
부 채	일반회계	-	103	△103	순감
순자산	일반회계	21,219	7,886	13,333	169.1

15)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가. 자 산¹⁶⁾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 대비 132억 3,000만원 증가한 212억 1,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은 3억 7,000만원 감소 했지만, 무형자산이 113억 6,9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0억 1,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2억 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부 채¹⁷⁾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300만원 감소한 0원으로 주요 요인은 유동부채 9,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임.

다. 순자산¹⁸⁾(=자산-부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3억 3,300만원 증가한 212억 1,9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16)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7)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18)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¹⁹⁾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A)	증 감(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일반회계	70,322	24,523	45,799	186.8
II.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4,551	13,826	10,725	77.6
III. 비배분비용	일반회계	-	-	-	-
IV. 비배분수익	일반회계	4,667	-	4,667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일반회계	90,206	38,349	51,857	135.2
VI. 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
VII. 재정운영 결과(V - VI)	일반회계	90,206	38,349	51,857	135.2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²⁰⁾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2개의 프로그램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245억 2,300만원 대비 457억 9,900만원 증가한 703억 2,2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19)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138억 2,600만원 대비 107억 2,500만원 증가한 245억 5,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증가에 의한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40만원 대비 46억 6,660만원 증가한 46억 6,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출금반납금 등 기타수익

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마.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교환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바.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²¹⁾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383억 4,900만원 대비 518억 5,700만원 증가한 902억 600만원임.

21)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4. 순자산변동표²²⁾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일반회계	7,886	-	7,886	-
II. 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90,206	38,349	51,857	135.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103,539	46,234	57,305	123.9
IV. 조정항목	일반회계	-	-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일반회계	21,219	7,886	13,333	169.1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4년도 재외 동포청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78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

나.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 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462억 3,400만원 대비 573억 500만원 증가한 1,035억 3,9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

²²⁾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조정항목은 발생하지 않았음.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 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78억 8,600만원 대비 133억 3,300만원 증가한 212억 1,900만원임.

IV. 재외동포청 성과관리 분석

1. 총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

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2. 성과체계 현황

재외동포청의 임무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상생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이며, 비전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1개의 전략목표와 2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청의 성과 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1	2	8	14

재외동포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 1,067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828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806억원임.

< 재외동포청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	-	1,067	994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	-	711	688
	정보화	-	-	117	118
	R&D	-	-	-	-
	소계(A)	-	-	828	806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	-	127	85
	기본경비	-	-	102	95
	교부금	-	-	-	-
	예비비	-	-	-	-
	차입이자 상환	-	-	-	-
	내부거래	-	-	-	-
	보전지출	-	-	-	-
	기타	-	-	10	9
	소계(B)	-	-	239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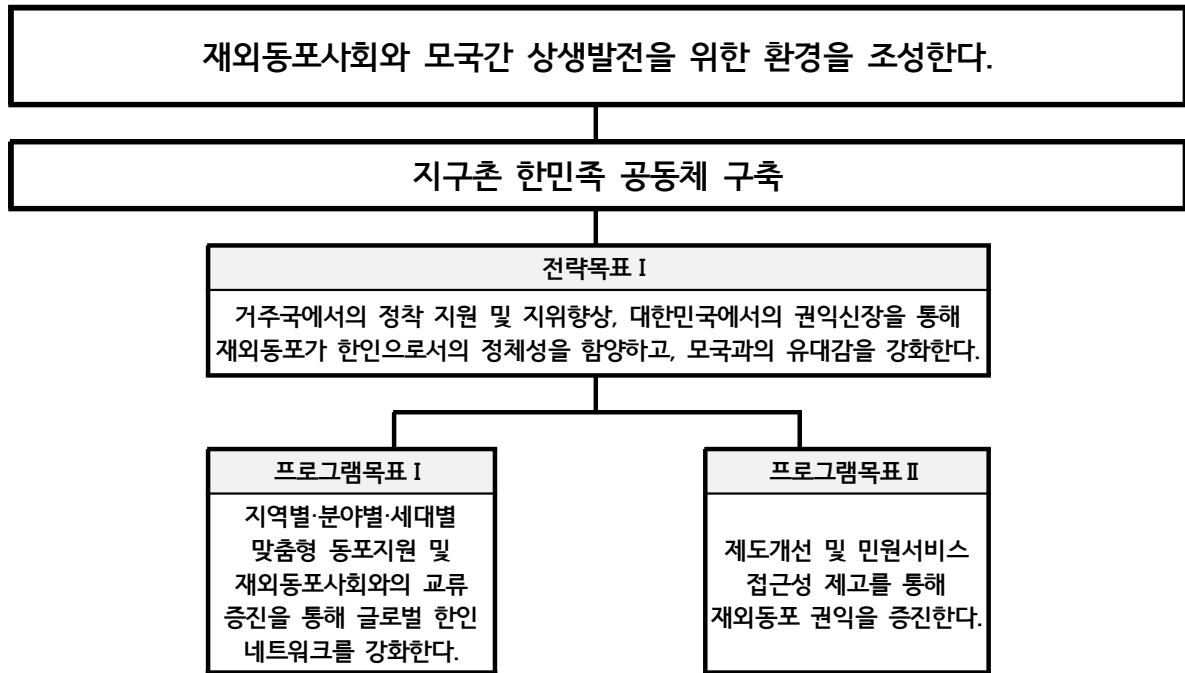
2024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청은 1개의 전략목표인 “거주국에서의 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한다”에 806억원(100%)를 투입하였음.

< 재외동포청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거주국에서의 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806	100.0

< 재외동포청 2024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재외동포청의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2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2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2개 성과지표 중 1개 성과지표는 달성(100%) 하였고, 1개의 성과지표 목표는 미달성(87.9%) 하였음.

<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2	2	-	1	1
		100.0%	-	50.0%	50.0%

<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 >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	
1. 한민족 정체성 함양 지수	목표 / 실적	88.6점 / 88.67점
	달성률(%)	100.1%
2. 영사민원 24 이용건수	목표 / 실적	115,035건 / 101,061건
	달성률(%)	87.9%

V.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해당사항 없음.

VI.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재외동포청은 총 11건의 주의 및 제도개선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조치완료 9건 및 조치 중 2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징계	
조치완료	-	1건	8건	-	9건
조치 중	-	1건	1건	-	2건
소 계	-	2건	9건	-	11건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1)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방안 마련	○ [지적사항]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개 단체에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포단체에서 시행한 사업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맞추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를 통해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현지 동포사회 교류증진 및 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동포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출된 사업결과물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재외동포협력센터와 관리방안 협의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5일	조치완료
(2) 사할린동포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필요	○ [지적사항]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교류협력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강화(5038-302)에서 세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예산을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4년부터 두 부서에서 수행하던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 - ’25년도 예산의 경우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함 * 기존 세부사업명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에서 변경 ○ 조치완료일 : 2024년 4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3) 재외국민등록제 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지적사항] 대부분의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률의 편차도 큼 ○ 부정확한 재외국민등록 실태는 정부가 해외체류중인 국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하고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비롯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 수행업체: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기간: 2024.7.~2025.1. ○ 재외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영사 민원서비스인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4.7.3.), 재외동포인증센터(‘24.11.28.) 이용 요건에 재외국민 등록이 선행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함 - 재외국민 등록을 위한 유인책 마련으로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28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4)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관리 필요	○ [지적사항]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재외동포 관련 기록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콘텐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바, 수집된 자료는 내부자료로 보관하는데 그치고 대국민 및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추진 - ’21년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결과, 총 4단계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0.2억원이 산출되었으나, ’25년 예산안 편성 시 1단계 사업예산 요구액(7.5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임.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음 -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재외동포 구술채록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채록 영상은 재외동포협력센터 SNS(유튜브)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특별전시 등을 추진하였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아카이브 서비스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5)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외교부 이관 필요	○ [지적사항]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 체결 담당 부처로서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및 동 사업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아닌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참가 현황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동 자료는 외교부에서 주한공관에 외교공한을 발송하여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교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인 현황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이관된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사업 대상 등 고려, 우리청 소관이 적절함 - 출국하는 우리 국민 참가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우리청은 공관과 협업하여 위홀 정보제공, 워홀러간 네트워크 구축, 상담서비스 제공 등 주재국 내 워홀러 대상 체류 지원활동 수행중 - 동포청-외교부 「제1차 정책협의회」 협의 결과 우리청 소관으로 협의 완료(*24.12.5.)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5일	조치완료
(6)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국내 재외동포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재외동포청은 16개 보조사업 중 5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 사유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단체 지원 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6월 11일, 심의 완료 즉시 안내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7)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개 사업을 선정하여 99만 1,400달러를 지원하였고, 그 중 6만 9,400달러가 반납되어 전체 반납률 7% 수준인데, 17개 사업은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6만 7,400달러) 반납함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기념성 행사 지원금의 반납 사유 등을 조사하여 추후 사업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도개선	○ 단체 지원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지원사업 심의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재외공관을 통해 사업추진 진행 상황 등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11월 간, 각 심의 차수별 반영	조치완료
(8) 스터디코리아 운영사업의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재외동포 학습자와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터디코리아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교사인증과정’의 수수료가 낮고 세부과정의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인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선,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콘텐츠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사인증과정’의 수수료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인원 증가를 위해 영어권 화자 뿐 아니라 비영어권 화자로 학습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교사인증과정의 ‘단축과정A’, ‘단축과정B’를 통합하여 ‘단축과정’으로 개편하여 세부과정을 개선함 - '24년 12월 사전 공지, '25년 1월부터 개편 과정으로 운영 ○ 비영어권자 화자를 위해 ‘한국어수업’ 강의 콘텐츠(110개)와 ‘한국 산업 발전상(30개)’의 러시아어·일본어 번역 중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9)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어 자료실 소장자료의 보유·관리 권한이 재외동포청을 거쳐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으나 청사 공간 부족,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지연 등의 사정으로 자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의 자료실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 국립외교원 내 별도 공간(외교타운 305호)을 확보하여 소장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자료실 홈페이지 개편 및 대출, 열람 서비스를 통해 소장자료 활용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10)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지원에 따른 건립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	○ [지적사항]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당초 2023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곡지구의 매입불가 통보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로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일을 2025년으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실제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임 ○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건립규모도 7,800㎡에서 1,042㎡가 감소한 6,758㎡로 축소됨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당초 목적인 바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립규모에 대하여 재논의하고 향후 계획된 공사 일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재정당국과 건립규모 등 논의 추진 예정임 - '24.11월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설계가 구체화되는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 완료 후 재정당국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완료 후 시공관리 유형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검토, 추가 지연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11) 순회영사 지원금 효율적 운용 필요	○ [지적사항] 순회영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반납된 3만 4,235달러 중 1만 5,733달러가 재배정되지 못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순회영사 지원금의 배정 및 재배정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주의	○ 실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반납 최소화 및 적시 재배정 조치 완료 - 공관별 예산 배정(실적, 민원 수요, 재외동포 수 등 종합 고려) ※ 총 예산(766백만원) 중 763백만원 집행(집행률 99.6%) - 분기별 실적 관리 및 불용예산액, 추가 수요 수시 점검 - 공관별 수요에 따른 반납액 재배정* 적시 조치 * 재배정: △1차(2.22), △2차(7.25), △3차(10.8), △4차(12.2), △5차(12.19)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9일	조치완료

